

의안번호	2213204
의 퇴 인	권향엽의원
회 답 일	2025.11.11.
추 계 번호	25D4854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의2 (자체점검 등의 특례) 제2항 신설	지방자치단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어 점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의2 (자체점검 등의 특례) 제2항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 구속 시 점유자에게 소방점검 비용 등 지원(안 제23조의2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어 점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, 소방점검 및 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－ 특정소방대상물은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[별표 2]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 등 30종으로 분류

- 소방점검 비용의 경우,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2025년도 소방시설 표준자체점검비를 살펴보면, 점검자 등급별(초급, 중급, 고급, 특급)로 초급 64만원에서 특급 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대상건물의 용도별로도 비용이 상이함
- 다만, 소유자 구속 등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수,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연면적, 점유자의 자체점검 실시 및 조치 여부, 평균 점검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살펴보면, 국토부의 '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'(2025.5.31.기준) 총 30,400건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전세사기 사범으로 구속된 소유자는 108명
 - 다만, 구속된 전세사기 사범의 주택유형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오피스텔, 아파트 등)을 특정하기 어렵고 해당 건물의 평균 소방점검 비용 등에 대한 자료 부재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